회사 연차 규정

- 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적용 대상)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.
- 제3조 (연차휴가일수)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직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며,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
- 제4조 (연차휴가의 사용) 직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,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.